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41

발의연월일: 2024. 8. 2.

발 의 자:백혜련·정성호·이재관

윤종군 • 이기헌 • 문진석

안태준 · 용혜인 · 민병덕

이재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말 기준, 국세 누계체납액 102.5조원 중 정상적으로 징수할수 없는 체납액인 "정리보류" 체납액은 86.9조에 달하며 약 84.8%를 차지하고 있음. 한편, 현재 채무조정 제도를 통하여 체납조세를 분납하는 방법은 개인회생제도가 유일함.

그런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 중 조세체납정보가 등록된 채무자의 약 79.4%는 무직·일용직자 등 소득 증빙이 불가능한 사람으로, 반복적·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하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 체납조세 분납 등의 조정을받을 길이 없음. 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의 체납조세 상환의지를 북돋우고, 국가의 막대한 세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조세특례제한법」의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와 같은 체납조세 분납제도의 마련이 시급함. 동 특례는 요건을 갖춘 영세개인사

업자의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분납허가를 규정함.

이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특례를 신설하고, 그 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납부지연가산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체납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체납자가 신속하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효과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67조의5 및 제167조의6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혜련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25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 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1절에 제167조의5 및 제167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7조의5(채무조정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①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4에 따른 체납액 징수 특례(이하 이 조에서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라 한다)를 적용받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체납액 중 지방세징수 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그 거주자에게 직권 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이하 이 조에서 "개인지방 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라 한다)를 적용한다.

-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4제2항제1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 세의 납부의무가 면제된 경우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가산금과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지방소 득세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의무 면제
- 2. 국세 체납액에 대한 분납이 허가된 경우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분납 허가. 이 경우 차수 및 납부기간은 국세와 동일 하게 적용하며, 분납할 금액은 국세와 동일한 비율의 금액을 적용

한다.

- ②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의 취소, 강제징수 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4를 준용한다.
- ③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결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료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 특례를 결정하거나 그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를 해당 거주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제167조의6(채무조정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제5항에 따라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은 제외하며, 이하 "징수곤란 체납액"이라 한다) 중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그 거주자에게 제2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 1. 제3항에 따른 신청일(이하 이 조에서 "신청일"이라 한다) 직전 5 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 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 2. 신청일 현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

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 ② 제1항에서 "체납액 징수특례"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1.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과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신청일 이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납부의무 면제
- 2.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분납 허가
- ③ 제1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체납액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분납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체납액 징수특례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체납액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일부터 제2항제2호에 따른 최종 분납기한까지는 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한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할 수 없다.
- ⑥ 체납액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후에 신청일 당시 해당 거주자로부 터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 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체납액 징수특례를 취소하고 강

제징수를 하여야 한다.

- ⑦ 체납액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총 5회 또는 연속하여 3회 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징수특례를 취소하고 강제징수를 하여야 한다.
- ⑧ 체납액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⑨ 제1항에서 "징수곤란 체납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말한다.
- 1. 신청일 현재 재산이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 2. 신청일 현재 강제징수가 종결되고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분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체납액
- 3. 신청일 현재 총재산가액이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 4. 그 밖에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 ①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 등 제2항제2호에 따른 분납에 대한 구체 적인 사항,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u><신 설></u> | 제167조의5(채무조정자의 개인지 |
| | 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① |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세특 |
| | 례제한법」 제99조의14에 따른 |
| | 체납액 징수특례(이하 이 조에 |
| | 서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라 |
| | 한다)를 적용받은 거주자의 종 |
| | 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
| | 의 체납액 중 지방세징수권 소 |
| | 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 |
| | 액에 대하여 그 거주자에게 직 |
| | 권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체 |
| | 납액 징수특례(이하 이 조에서 |
| |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 |
| | 특례"라 한다)를 적용한다. |
| |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 | 의14제2항제1호에 따른 납부 |
| | 지연가산세의 납부의무가 면 |
| | 제된 경우의 종합소득에 대한 |
| | 개인지방소득세 가산금과 |
| |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 |
| | <u>항제1호에 따른 개인지방소득</u> |
| | 세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의 |

무 면제

- 2. 국세 체납액에 대한 분납이 허가된 경우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납 허가. 이 경우 차수 및 납부기간은 국세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분납할 금액은 국세와 동일한 비율의 금액을 적용한다.
- ②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의 취소, 강제징수 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4를 준용한다.
- ③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 장은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결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하는 서식 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료를 즉 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결정하거나 그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를 해당 거주자에게 즉시 통지

<신 설>

하여야 한다.

제167조의6(채무조정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에 관한 법률」 제72조제5항에 따라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개인 지방소득세 체납액은 제외하며, 이하 "징수곤란 체납액"이라한 중 지방세징수권의 소멸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그 거주자에게 제2 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 1. 제3항에 따른 신청일(이하 이 조에서 "신청일"이라 한 다) 직전 5년 이내에 「조세 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 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 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 2. 신청일 현재 「조세범 처벌

 법」에 따른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

이 없는 사람

- ② 제1항에서 "체납액 징수특례"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1.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가 산금과 「지방세기본법」 제 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부 지연가산세(신청일 이후의 납 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의 납부의 무 면제
- 2.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분 납 허가
- ③ 제1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체납액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 례를 신청(분납기간은 5년 이 내의 범위에서 정한다)하여야 한다.
- ① 제3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 특례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

일부터 2개월 이내에 체납액 징수특례의 적용 여부를 결정 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그 결과 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체납액을 관할하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신청일부터 제2 항제2호에 따른 최종 분납기한 까지는 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한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할 수 없다.
- ⑥ 체납액을 관할하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후에 신청일 당시 해당 거주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체납액 징 수특례를 취소하고 강제징수를 하여야 한다.
- ① 체납액을 관할하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체납액 징수특 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총 5 회 또는 연속하여 3회 분납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항에도

- 불구하고 체납액 징수특례를 취소하고 강제징수를 하여야 한다.
- ⑧ 체납액을 관할하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제6항 및 제7항 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취 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 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 야 한다.
- ⑨ 제1항에서 "징수곤란 체납 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말한 다.
- 1. 신청일 현재 재산이 없어 해 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 2. 신청일 현재 강제징수가 종 결되고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 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 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분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체 납액
- 3. 신청일 현재 총재산가액이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

우 그 체납액

 4. 그 밖에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체납액

①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 등 제2항제2호에 따른 분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